

행 정 자 치 부

개선 요구 · 통보

제 목 가로수의 조성·관리 업무 조례 반영 미흡 및 조례 개정 필요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

내 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를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가로수 조성·관리기준 별표10과 산림청 고시「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은 동법 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 또는 ○○○○중앙회, ○○○○○○을 제외하고는 산림사업법의 등록을 하지 않고는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0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가로수의 조성·관리 업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 미흡(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남해군)

가로수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한 것은 가로수를 심는 단계부터 관리 단계까지 지방특성에 맞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별표10과 산림청 고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그에 따라,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창원시 등 12개 시·군은 아래 【표1】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과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별표 10과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김해시 등 6개 시·군의 「조경시설 관리 등의 조례」는 「도로법」 및 「건축법」에 따른 조경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업무 중 일부가 조례에 포함되어 제정·운영 되고 있다.

【표1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조례명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10)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2)	조경시설 관리 등의 조례(6)
시·군	창원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

2. 조경시설 관리 등의 조례 개정 필요(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남해군)

함안군 등 5개 군의 「조경시설 관리 등의 조례」에서 가로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아래 【표2】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가로수 관리사업은 산림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사업법인, ○○○○ 또는 ○○○○중앙회 등과 예외적으로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체가 사업 참여할 수 있으므로,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남해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사업 면허(남해군)를 가진 업체를 가로수 관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함안군 등 5개 군의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게 제정된 것이다.

【표2 조례에 따른 가로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 현황】

시·군	김해시	함안·창녕·고성·합천군	남해군
위탁 가능 업체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산림조합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식물방제업, 산림조합	조경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식물방제업, 산림조합

조치할 사항 김해시장, 함안군수, 창녕군수, 고성군수, 남해군수, 합천군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가로수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경시설 관리 등의 조례」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창녕군수, 고성군수, 남해군수, 합천군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정당한 사업자가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관리 등의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